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7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춘석·한병도·윤준병

장철민 · 김윤덕 · 정준호

이연희 • 박홍근 • 임미애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 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 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3조(벌칙) ① (생 략)	제1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
	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
	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
	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
	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
	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
	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 1. (생략)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 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 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 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 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 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 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9. (생략)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9. (현행과 같음)